

## 2015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5년 11월 05일(목요일) 18:20 ~ 20:00

○ 장소 : 무주리조트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장 인사 4. 위원장 개회 선언 5. 안건상정 6. 폐회

○ 상정안건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

2. 2015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간 사 : 지금부터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권진철) (국민의례를 마친 후)위원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는 구성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박병덕) 재정 운영과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

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가 됨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1안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배포된 회의자료에 의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

부본부장 : 법령에 따라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기

(최용재) 위한 기준안을 설명함

위원장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

(박병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지난 1차 회의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이 17,000천원 정도 지급이

(구종남)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급한도액이 변경되더라도 17,000천원 정도 금액이 지급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본부 교육·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지급액을 합치면 17,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일부

부본부장 : 분은 영역별 단가이자 지급한도액입니다. 교수님들께서 평가지표 이행 후, 평

(최용재) 가위원회에서 평가 후에 해당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예산에서 교원을 비롯하여 직원, 조교가 다 받을

(구종남)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부분도 원래 같이 포함하여 편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시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예산총칙에 이용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기 때문에 예산확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일)

위원 : 직원들은 작년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학생지도비  
(구종남) 지급단가를 5,950천원에서 8,800천원으로 변경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지급한도액을 변경할 수  
(박성일) 있습니다.

위원 :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은 현재 학생지도 부분으로 지급한도액이 8,800  
(구종남) 천원인데, 다른 대학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본부 지역거점대학들의 지급단가를 비교하면 우리대학의 지급한도액은 높은 편이  
부본부장 :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용재)  
위원 :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전남대, 충남대 등은 9,000천원 ~ 10,000천원 정도로  
(권덕창)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교통대 등도 우리대학보다 높아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직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리대학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 기준안을 살펴보면 우리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지급한도액이 17,000천원 정  
(송영남) 도인데,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본부 모든 연구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지급액을 전부 받지 못할 가능성도  
부본부장 : 있습니다.

(최용재)  
위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가 기성회회계에서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성격이 있었  
(송영남) 는데, 최고지급액과 최저지급액이 차이가 너무 커지므로 지급하한선을 정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법령상 한도액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교수님들의 경우  
(박병덕)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급액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본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등 법령상에서는 최저지급액을 정하는  
부본부장 : 것은 위법입니다.  
(최용재)

위 원 : 회의자료 중 활동영역별 차등 지급안에서 공통항목, 선택항목을 살펴보면  
(신양균) 우리대학의 보통의 교수님들이라면 대부분 평가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최소 10,000천원 이상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예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와 비교하면 현재 교육·연구  
(송영남) 및 학생지도비 지급안은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시에 감액을 하는 것이므로 교수들의 복지나 편의가 하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이민호) 사안으로서, 지급안을 대학에 유리하게 수정하는 것은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안건의 내용상 질의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자면 세부적인 내용은 본부와 교수회가 협의를 거쳐 내용을 계속 보완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접촉을 통해서 최대한 대학측에 유리한 지급안을 만들도록 노력하면서 제출된 지급안에 대해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위 원 : 지난번 회의에서 지급안을 의결해서 교수님들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신양균) 를 선지급했는데 지급안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본부 추후에 행정적인 절차로 수정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부장 :

(최용재)

위 원 : 지급 개정안이 의결 시 다시 활동계획서를 받고 제약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송영남) 들이 교육,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교수님들께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급여보조성  
(신양균) 경비가 아니라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비용이라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시간이 많이 지나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박병덕) 기준안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고 몇 개의 항목을 수정보완해서 이 기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대해서 다시 연구, 보완해서  
(송영남) 추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지급 기준안은 기획조정본부에서 교육부와의 협의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도  
(윤명숙) 출해낸 결과로서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기준안을 통과시키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같은 민감한 사안은 교수회의 설명회  
(구종남) 등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교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급안을 보완하고 난 후  
(박병덕) 다음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 원 : 저는 오늘 상정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을 의결하고 추후에  
(권덕창)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직원들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도 있기  
(박병덕)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기준안이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보완해야할  
사안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의 동의 요청 이전에 지급 규정안과 관련하여 1시간여 동안 위원들 간  
논쟁이 있었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안건 1안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  
(박병덕) 과하되 평가지표안에 대해서 교직원의 의견을 취합한 수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위원회에 상정한다.」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2안 「2015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2015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회의자료에 의거 자  
(박성일) 세하게 설명함

위원장 : 2015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박병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럼 안건 2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원 : 2015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  
(김 영) 을 동의합니다.

위원들 : (전원)동의합니다.

위원장 : 안건 2안 2015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 원안  
(박병덕)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3인을 호선해서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  
할 수 있음으로 위원분들이 동의해주시면 대표자 3인을 선출해서 간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재정위원회 1차 회의 때 서명해주신 분들이 학교 내에 상주해 계셔서 이번에도  
(김영) 간서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회의록에 간서명 하는 위원으로 구종남 위원, 권덕창 위원, 변재옥 위원이  
(박병덕)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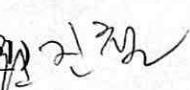
출석위원 박병덕, 신양균, 유철중, 김성주, 조진우, 이민호, 윤명숙, 구종남, 송영남,  
(14명) 권덕창, 변재옥, 한승진, (오영준, 김영 : 개회 선언 후 참석)

✓ | ✓ 

출석교직원 최용재(기획조정본부), 박성일(재무과장)  
(2명)

기록자 간사 권진철, 손대섭

위 원 장 : 박 병 덕 (인) 

간 사 : 권 진 철 (인) 

기 록 자 : 손 대 섭 (인) 